

정보기술법

국 가	베트남
원 법 률 명	Law on Information Technology
제 정	2006.06.29 67/2006/QH11
수 록 자 료	베트남 정보기술법, pp.18-52
발 행 사 항	외교통상부, 2007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베트남 정보기술법

(법률 제67호, 2006.6.29)

2001년 12월 25일 제10대 국회 10차 회의에서의 의결, 제51/2001/QH10호에 따라 수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은 IT(정보기술)에 관해 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조정 범위

본 법은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보장하는 방법들,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이하 조직 및 개인이라 부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법은 베트남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에 참가하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과 외국의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IT법의 적용

1.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과 관련된 같은 문제에 대해서 IT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IT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조약에 본 법의 규정과 다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설명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정보기술(IT)이란 디지털정보를 생산, 전달, 수집, 처리, 저장 및 교환하기 위한 현대적 기술 및 기술 도구, 과학적 방법의 집합이다.
2. 디지털정보란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정보이다.
3. 네트워크 환경이란 정보인프라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전달, 수집, 처리, 저장 및 교환되는 환경이다.
4. 정보인프라란 디지털정보의 생산, 전달, 수집, 처리, 저장 및 교환하는 일에 사용되는 설비시스템으로, 원거리 통신망, 인터넷, 컴퓨터 망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5. 정보기술의 응용이란 경제-사회, 대외, 국방, 안보 및 기타 활동 영역에 속한 활동에서 능률, 품질,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일이다.
6. 정보기술의 개발이란 디지털정보를 생산, 전달, 수집, 처리, 저장 및 교환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 개발하는 활동이며 정보기술 인력 양성, 정보기술 산업 개발 및 정보기술 서비스 개발 활동이다.
7.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란 정보, 지식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 조건, 능력과 정보인프라에 관한 차이이다.
8.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벤처투자란 큰 이익의 전망도 있지만 위험성도 높은 정보기술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9. 정보기술 산업이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 및 디지털정보 내용을 포함한 정보기술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하이테크 기술 - 경제 분야이다.
10. 하드웨어란 완성된 디지털 설비 제품으로 부품, 부분품을 포함한다.
11. 디지털 설비란 전자, 컴퓨터, 원거리통신, 케이블, 무선전파의 수신, 발신 설비 및 디지털정보를 생산, 전달, 수집, 처리, 저장 및 교환 하는데 사용되는 기타의 집적설비이다.
12. 소프트웨어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설비를 조종하기 위하여 기호, 코드 혹은 언어체계로 묘사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13. 원시코드(source code)란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디코딩되기 전의 제품으로 디지털 설비를 조종할 수 없다.

정보기술법 [베트남]

14. 기계어코드(machine code)란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디코딩된 후의 제품으로, 디지털 설비를 조종할 수 있다.
15. 스팸메일(spam mail)이란 수신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수신해야 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지는 메시지나 전자 우편이다.
16. 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설비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전염시키고 혹은 디지털 설비 속에 저장중인 정보를 복사, 변형, 삭제하는 것이다.
17. 웹사이트란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웹페이지 혹은 웹페이지의 집합으로, 정보를 제공, 교환하는 서비스를 한다.
18. 디지털화란 각종 유형의 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바꾸는 것이다.

제5조: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에 관한 국가의 정책

1. 경제-사회개발 전략 및 국가의 공업화, 현대화 사업에서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을 우선한다.
2. 경제-사회개발, 대외, 국방, 안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활동에 조직 및 개인이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정보기술 산업이 중점 경제 분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국내 및 수출시장의 수요에 부응토록 한다.
3.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4. 절실한 일부 영역에서의 정보기술 응용을 위해 일부 국가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정보기술 산업을 조성하고, 정보기술 인력을 개발한다.
5. 국가 정보인프라 개발을 위해 편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6. 농업, 농촌, 원격지, 국경지역, 도서지역, 소수종족, 장애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7.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8. 국제 교류와 협력을 증강하고, 정보기술 분야에서 외국에 있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6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의 내용

1.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관한 전략, 기본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정보기술 분야의 법규, 국가표준, 기술기준을 수립, 공포, 선전, 보급, 시행한다.
3. 정보기술의 응용 활동에서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관리한다.
4. 정보 자원,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사용한다.
5.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6. 정보기술 인력을 관리, 훈련, 양성, 개발한다.
7. 정보기술 분야의 제품, 공익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정책 및 각 규정을 수립한다.
8. 국방, 안보 및 본 법 제14조에 규정된 긴급의 경우에 서비스하는 정보기술 인력을 동원하는 일과 관련한 제도, 정책 및 각 규정을 수립한다.
9. 정보기술에 관한 통계를 관리한다.
10.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감사, 검사, 분쟁해결, 고소 및 위반 처리를 한다.

제7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정부는 통일적으로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를 한다.
2. 우정통신부는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 실현과 관련된 부, 부급 기관과의 협의, 주재하는 일에서 정부 앞에 책임을 진다.
3. 부, 부급기관은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업무 분장에 따른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우정통신부와 협의, 주재할 의무가 있다.
4.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5. 국가기관의 활동 내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을 실시하는 일은 정부가 규정한다.

정보기술법 [베트남]

제8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

1. 정보기술의 응용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 a) 본 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교환하고 사용한다.
 - b) 본 법 제1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정보에 대해 복구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정보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복구해줄기를 요구한다.
 - c) 그 정보의 복구를 거절당하거나 그 정보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복구하는 일을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권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요구한다.
 - d) 연락주소 소유주의 동의가 있을 때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연락 주소를 발송한다.
2. 정보기술의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 a) 정보기술 제품을 연구, 개발한다.
 - b) 정보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디지털화, 유지 및 정보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3. 국가기관은 만일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비밀과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그 정보 수신의 거절권이 있다.

제9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1.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자신의 디지털정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2. 조직과 개인이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영업 활동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a)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b) 설립결정에 관한 정보, 활동허가서 혹은 영업등록인증서(있다면)
 - c) 제공자의 관리기관 명칭(있다면)



- d) 제품, 서비스의 가격, 세금, 운송비(있다면)에 관한 정보
- 3. 정보기술의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 a) 연구, 개발 결과의 충실성을 보장한다.
 - b) 데이터베이스 소유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재생산, 분배, 광고, 전달, 그 데이터베이스와 합치기 위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4.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동할 때, 국가기관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 a) 본 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실현되는 각 활동에 관해 대중통신수단으로 통보한다.
 - b) 네트워크 환경 상에 그 기관의 연락 주소를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통보한다.
 - c) 네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보내온 조직 및 개인의 문서에 대해 해당 권한에 따라 회신한다.
 - d) 공공의 이익, 행정절차를 서비스하는 정보를 네트워크 환경 상에 제공한다.
 - e)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사용한다.
 - f)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문서의 발신, 수신하는 일에서 정보 내용의 신뢰도와 비밀을 보장한다.
 - g) 정보 및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의 의견의 교환, 제공 및 청취 문서의 적시, 충분, 정확성을 보장한다.
 - h)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보장한다.
 - i) 정보 제공 및 웹페이지를 통한 의견 청취는 본 법 제28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정보기술에 관한 감사

- 1. 우정통신부 감사는 정보기술에 관한 전문 감사 직능을 수행한다.
- 2. 정보기술에 관한 감사의 조직과 활동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정보기술법 [베트남]

제11조: 정보기술에 관한 회(會), 협회

1. 정보기술에 관한 회, 협회는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2. 정보기술에 관한 회, 협회는 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12조: 엄금하는 행위

1.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관한 합법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비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도메인 시스템의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하고, 정보인프라를 파괴하고,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파괴한다.
2. 다음 목적으로 디지털정보를 제공, 교환, 전달, 저장, 사용한다.
 - a)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항, 전인민의 단결을 파괴한다.
 - b) 폭력 조장, 침략전쟁을 선전, 각 종족 사이 및 각 국민 사이의 원한을 일으킴, 음란, 퇴폐, 사회문제, 이단, 미신을 선동, 민족의 미풍양속을 파괴한다.
 - c) 국가비밀, 군사, 안보, 경제, 대외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비밀의 누설
 - d) 조직의 위신, 공민의 위신, 인격, 명예를 왜곡, 무고, 침해한다.
 - e) 법률 규정에 의해 금지된 목록에 속한 제품, 서비스를 광고, 선전한다.
3. 정보기술 활동 중 지적재산권 침해, 법률에 반하는 정보기술 제품의 생산, 유통, 타 조직 및 개인의 웹 사이트 위조,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 및 개인의 도메인에 대해서 불법 커백팅을 만든다.



제 2 장 정보기술의 응용

제 1 편 정보기술의 응용에 관한 일반 규정

제13조: 정보기술의 응용 활동에 관한 일반 원칙

1. 조직 및 개인은 본 법의 규정 및 관련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 기술의 응용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2. 정보기술의 응용은 경제-사회, 대외, 국방, 안보 분야에 속한 활동을 하는 것이며, 홍수, 태풍, 천재지변, 기타 재난의 예방, 방지 활동, 구난, 구호활동 및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활동이다.
3.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거리 통신, 라디오 방송, TV방송 활동을 진행 하는 조직 및 개인은 원거리 통신, 신문에 관한 법률 및 본 법의 규정을 실현해야 한다.

제14조: 긴급의 경우 정보기술의 응용 우선

1. 다음 긴급의 경우들 중 하나가 있을 때, 관계 국가기관은 정보기술의 응용에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 일부 혹은 전부를 동원하는 결정을 한다.
 - a) 홍수, 태풍, 화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의 예방과 방지에 서비스
 - b) 구급 및 전염병 예방, 방지에 서비스
 - c) 구난, 구호 서비스
 - d) 국방, 안보, 사회질서 보장, 사회 안전, 범죄예방, 방지 서비스
2. 정부는 긴급의 경우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응용을 우선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5조: 디지털정보의 관리 및 사용

1. 조직 및 개인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디지털

정보기술법 [베트남]

정보 사용의 자유권이 있다.

2. 관계 국가기관은 디지털정보의 접속과 편리한 사용을 보장하는 방법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3. 디지털정보의 제공, 교환, 전달, 저장, 사용하는 일은 본 법 제12조 2항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4. 조직 및 개인은 디지털정보 소유주가 경고 혹은 법률 규정이 정보의 인용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를 인용할 수 없다.
5. 디지털정보의 인용을 허가 받은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그 정보의 소스를 분명히 언급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디지털정보의 전달

1. 조직 및 개인은 본 법의 규정과 부합하는 타 조직 및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전달할 권리가 있다.
2. 타 조직 및 개인의 디지털정보를 전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자동적으로, 중간단계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임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그 임시로 저장한 활동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저장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정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동안 저장된다.
3. 디지털정보를 전달하는 조직 및 개인은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들을 적시에 진행할 책임이 있다.
4. 타 조직 및 개인의 디지털정보를 전달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자기 자신이 정보의 전달을 시작한다.
 - b) 전달 받는 정보 수신자를 선택한다.
 - c)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을 선택, 수정한다.



제17조: 디지털정보의 임시저장

1. 조직 및 개인은 타 조직 및 개인의 디지털정보를 임시 저장할 권리가 있다.
2. 타 조직 및 개인의 디지털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정보의 내용을 수정한다.
 - b) 정보 내용의 접속 혹은 업데이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 c) 임시 정보 저장을 통한 불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d)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제18조: 디지털정보의 저장 장소 임대

1. 디지털정보의 저장 장소 임대란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저장 설비의 용량을 임대하는 서비스이다.
2. 저장 디지털정보의 내용은 본 법 제1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3. 디지털정보의 저장 장소를 임대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 a) 웹사이트 설립을 위해 디지털정보의 저장 장소를 임차하는 소유주 명단 및 그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보관된 디지털정보 소유주 명단을 확정하는 일에 관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를 이행한다.
 - b)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불법적인 디지털정보의 접속 차단 혹은 디지털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을 적시에 진행한다.
 - c) 저장중인 정보가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경우, 타 조직 및 개인에게 디지털 정보 저장 장소 임대를 중지한다.
 - d) 정보 저장 장소를 임차하는 조직 및 개인의 정보 비밀을 보장한다.

제19조: 디지털정보 검색도구

1. 디지털정보 검색도구란 디지털정보의 검색 요구를 접수하고, 검색하여 검색된 디지털 정보를 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2. 국가는 디지털정보 검색도구를 개발,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3. 조직 및 개인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관계 국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경우 타 조직 및 개인에게 그 디지털 정보 소스에 대한 검색도구의 제공을 중지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디지털정보 내용의 감시, 감찰

1. 관계 국가기관은 디지털정보를 감시, 감찰하고, 디지털정보의 저장 혹은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기술의 응용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조직 및 개인의 디지털정보를 감시, 감찰하고, 타 조직 및 개인의 디지털정보의 전달 혹은 저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제21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사용

1. 네트워크 환경에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법률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그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형식, 범위, 장소 및 목적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b) 수집된 개인 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혹은 양측의 합의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 정보를 저장한다.
 - c) 개인정보의 분실, 탈취, 누설, 변경 및 파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 및 기술적 방법을 진행한다.



- d) 본 법 제22조 1항에 따른 재검사, 정정 혹은 삭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 필요한 방법을 즉시 진행하고, 그 정보가 정정될 때까지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조직 및 개인이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할 권리가 있다.
 - a)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제품, 용역 계약을 체결, 수정하거나 계약을 이행한다.
 - b)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제품, 용역의 가격, 사용료 계산
 - c)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22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저장, 제공

- 1. 개인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그 정보를 검사, 정정 혹은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 조직 및 개인은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3. 개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웹사이트 설립

- 1. 조직 및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를 설립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웹사이트의 내용 및 활동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
- 2. 웹사이트 설립시 베트남 국가 도메인(.vn)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우정통신부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웹사이트 설립시 베트남국가 도메인(.vn)을 사용하지 않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정보를 우정통신부 사이트에 통보해야 한다.
 - a) 설립 결정문에 기록된 조직의 명칭, 활동허가서, 영업등록인증서 혹은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개인의 성명
 - b) 주민등록 번호, 혹은 개인의 여권번호, 발급일, 발급지

정보기술법 [베트남]

- c) 조직의 본사 주소 혹은 개인의 거주지 주소
 - d)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e) 등록된 도메인명
3. 조직 및 개인은 본 조 2항에 규정된 정보의 정확성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져야하고, 정보가 변경될 때는 그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4. 신문, 잡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웹사이트는 본 법과 신문 잡지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5. 경제-사회, 대외, 국방, 안보를 위해 사용되는 웹사이트는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제 2 편

국가기관의 활동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제24조: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원칙

1.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은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의 활동의 효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은 국가기관의 활동 개혁 프로그램 및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촉진해야한다.
3.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은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4. 활동의 과정과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한다.
5. 각 국가기관의 전체 정보시스템 속에서 정보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적합성을 보장한다.
6. 안보, 안전, 절약 및 효과를 보장한다.
7. 국가기관의 수장은 자신의 관리 권한에 속한 정보기술의 응용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제25조: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전개를 위한 조건

1. 국가기관은 해당 기관의 활동 중의 정보기술 응용 전개를 위한 각 조건을 갖출 의무가 책임이 있다.
2. 정부는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을 보장하는 각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음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a) 각 국가기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활동 실현 노력
 - b) 경제-사회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 영역은 정보기술의 응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 c) 디지털정보의 공동 사용, 공유에 관한 일
 - d) 단계별로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인프라 구축, 인력 개발, 구제협력, 연구-개발 장려, 우선되는 분야
 - e)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을 보장하는 재정
 - f)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에 관한 중점 프로젝트, 제안서, 프로그램

제26조: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내용

1. 국가기관의 활동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수립하고 사용하며, 국가 기관과 조직 개인과의 정보 교환과 제공 활동을 한다.
2. 기관의 활동 및 공공의 이익에 서비스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 수집, 유지한다.
3.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의 교환, 제공하는 일과 조직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각종 양식을 수립한다.
4. 본 법 제23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5. 국가의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 제공한다.
6.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공무원의 정보기술의 응용 인식과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8. 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동한다.

제27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국가기관의 활동

1. 네트워크 환경에서 국가기관은 다음의 활동을 한다.
 - a) 조직 및 개인과 정보를 제공, 교환, 수집한다.
 - b) 내부 및 타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 c)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d) 기타 활동은 정부의 규정을 따른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의 수신, 발신 시점과 장소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국가기관의 웹사이트

1. 국가기관의 웹사이트는 다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a) 조직 및 개인의 접속이 편리함을 보장한다.
 - b) 조직 및 개인이 웹사이트 상의 각종 양식(있다면)에 접속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 c) 웹사이트 상의 정보의 내용에 대해 정확성과 통일성을 보장한다.
 - d) 웹사이트 상의 정보를 적시에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 e) 국가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한다.
2. 국가기관의 웹사이트는 다음의 주요 정보를 담아야 한다.
 - a) 그 기관 및 직속 산하기관의 조직, 직능, 임무, 권한
 - b) 해당 분야의 법규 및 관련 법규 체계
 - c) 각 직속 산하기관이 이행하는 행정 절차, 순서, 각 행정절차, 순서를 이행하는 각 단계별 책임자, 행정절차 해결 시한
 - d) 관련 분야의 법, 제도, 정책, 전략, 기본계획의 정보를 선전, 배포, 안내
 - e) 각 직속 산하기관별 공식 이메일 주소와 관련 직책, 담당자 명단
 - f) 프로젝트, 투자목록, 입찰, 구매에 관한 정보
 - g) 본 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관이 실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활동 목록
 - h) 조직 및 개인의 의견 접수 항목
3. 국가기관은 본 조 2항에 규정된 정보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 3 편
상업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제29조: 상업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원칙

1. 조직 및 개인은 상업에서 정보기술을 응용할 권리가 있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업 활동은 본 법, 상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 제품 판매 웹사이트

1. 조직 및 개인은 본 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품 판매 웹사이트를 개설할 권리가 있다.
2. 제품 판매 웹사이트는 다음의 주요 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 a) 제품, 서비스, 거래조건, 분쟁해결 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b) 소비자에게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불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c)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비자가 합의를 수정,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들에 대해서 공포한다.
3. 제품 판매 웹사이트 소유 조직 및 개인은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약체결, 주문, 지불, 광고, 판매촉진활동에 관하여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이행한다.

제31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정보 제공

1. 각 측이 다른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판매,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은 계약체결을 위해 다음의 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네트워크 환경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 위해 이행되는 순서
 - b) 확인(confirm) 및 잘못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는 기술적 방법
 - c) 계약 서류의 저장 및 그 서류로의 접속 허용
2. 소비자에게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때 조직 및 개인은

정보기술법 [베트남]

소비자가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업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된 문제의 해결

구매자가 판매자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했으나 입력시스템이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구매자는 다음의 각 방법을 이행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1. 자신의 잘못 입력된 정보에 관해 판매자에게 적시에 통보하였고 구매자 역시 그 통보를 접수했다는 확인이 있다.
2. 인수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제품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않고 반환하였다.

제33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불

1.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불을 이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불조건, 순서, 절차는 관계기관이 규정한다.

제 4 편

일부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제34조: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 국가는 교육, 학생선발, 훈련 및 교육영역에서의 기타 활동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교육하는 일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을 장려한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육 및 훈련활동을 진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본 법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관계 국가기관은 교육 및 훈련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 개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전개,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교육훈련부는 교육 및 훈련활동에 관한 조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교육 및 훈련활동에 관한 수료증, 졸업장의 법적 가치의 공인을 규정하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교육 및 훈련의 품질을 검정한다.

제35조: 의료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 국가는 의료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본 법 및 의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보건부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의료 활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36조: 문화-정보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 국가는 문화 상품의 디지털화, 저장, 디지털화된 문화 상품의 보급 및 문화영역에서의 기타 활동하는 일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 문화, 신문 잡지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본 법 및 신문잡지, 문화정보에 관한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국가로부터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 상품의 디지털화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조직 및 개인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 상품의 디지털화 이행 조건에 관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오락 활동 관리를 규정한다.
 - a) 오락의 내용은 건전하고 교육성, 문화성이 있으며 민족의 미풍 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b)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각 대상의 권리와 이익은 사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과 밀접해야 한다.
 - c) 기술적 안전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한다.
 - d) 정치 안보, 질서, 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이 활동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한다.

제37조: 국방,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국방,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활동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 2 장
정보기술의 개발

제 1 편
정보기술의 연구, 개발

제38조: 정보기술 연구, 개발의 장려

1.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국방, 안보의 보장,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 및 개인이 정보기술과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2. 경제-사회 관리의 혁신, 기술의 혁신을 위해 정보기술 및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조직 및 개인은 세금, 대출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우대를 향유한다.
3. 국가는 과학, 기술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이 정보기술 및 제품을 연구-개발 결과를 생산 및 생활에 널리 응용하도록 이전할 여건을 조성한다.

제39조: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기반

국가는 정보기술 연구-개발 조직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건설하는데 투자하기 위하여 자본을 동원하고, 조직 및 개인이 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건설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국제 규격에 맞는 정보기술에 관한 일부 중점 시험실에 투자하고, 정보기술에 관한 중점 시험실의 사용 규정을 공포한다.



제40조: 정보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

1. 국가는 조직 및 개인이 정보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2.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주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정보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우선하며, 정보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결하는 모형을 개발한다.
3. 정보기술에 관한 국 관리기관은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중점 정보기술 제품을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 교육, 연구기관을 선발을 주재한다.

제41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활동에서의 기준 및 품질

1. 정보기술 제품 및 용역의 기준, 품질 관리는 기준, 품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2. 조직 및 개인이 정보기술 제품 및 용역을 생산, 제공하는 일에 참여 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의 기준을 공포하도록 하고, 자신의 제품 및 용역은 그 공포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정보기술 제품 및 용역의 품질은 다음의 형식을 통해 관리된다.
 - a) 기술 기준,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서
 - b) 기술 기준, 표준을 공포
 - c) 품질 검정
4. 우정통신부는 국가표준 혹은 국제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공포하고, 기술기준을 공포하고 적용하며,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국내외의 검사 기관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정보기술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검사 기관을 공포한다.
5.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표준 평가의 상호 인증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을 따른다.

제 2 편
정보기술 인력개발

제42조: 정보기술 인력개발 정책

1. 국가는 정보기술 인력의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며, 규모가 있는 인력 개발 정책을 수립한다.
2.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관한 국가의 중점적이고 우선적인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정보기술 인력양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직 및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기술 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이 장려된다.
4. 양성기관은 정보기술 인력 양성 활동에서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에 상당하는 우대를 받는다.
5. 국가는 각 교육기관에서 국민교육체계 내의 교사, 대학생 및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을 지원한다.

제43조: 정보기술 수수료증

우정통신부는 교육훈련부 및 노동사회복지부와 협의하여 정보기술 훈련 활동 및 정보기술 수수료증 발급 조건,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외국조직의 정보기술 수수료증의 공인에 대해 규정한다.

제44조: 정보기술 인력의 사용

1. 각 국가기관 내의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관한 전담 책임자는 근무 조건에 대한 우대제도를 향유한다.
2. 정보기술에 관한 직업분야의 기준, 직책은 관계 국가기관이 공포한다.

제45조: 외국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1. 국가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르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며,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기술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찾게 할 목적으로 조직 및 개



인이 노동시장을 개척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장려한다.

2. 국가는 정보기술 제품의 개발, 생산, 임가공을 위하여 국내의 노동자를 선발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제46조: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의 보급

1. 국가는 전국 범위 내에서 정보기술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2.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의 조직 및 개인에게 정보기술 지식의 보급 활동을 수립하고 전개할 의무가 있다.
3. 교육훈련부는 국민교육체계에서 정보기술 지식의 보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국가는 정부의 규정에 따른 시기별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가난한 자, 소수 종족 및 기타 우대 대상에 대한 정보기술 지식의 교육, 보급에 관한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제 3 편

정보기술 산업 개발

제47조: 정보기술 산업의 유형

1. 하드웨어 산업이란 부품, 부분품, 디지털 설비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2. 소프트웨어 산업이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자동화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설치, 유지 보수, 사용 안내를 제공한다.
3. 내용 산업이란 경제-사회 정보, 과학-교육 정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문화-오락 정보 및 기타 유사제품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제48조: 정보기술 산업 개발정책

1. 국가는 정보기술 산업의 개발투자를 우선, 우대하고, 국민경제 부문에서 중점 경제 분야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소프트웨어 산업과 내용 산업을 중시한다.
2. 국가는 정보기술 산업, 값싼 디지털 설비의 공급 및 개발투자 분야에서 벤처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각 투자자를 장려한다.
3. 정부는 정보기술 산업 개발에 대한 우대, 우선의 정도 및 기타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9조: 정보기술 산업 시장의 개발

관계 국가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기술 산업 시장개발 활동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한다.

1. 정보기술의 응용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정보기술 제품을 사용하고 구매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판매를 촉진하고, 국내에서 전시회, 전람회를 개최하고, 국제 전시회, 전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세계에 베트남 정보기술 산업의 모습을 광고하고 마케팅한다.
3.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을 정한다.

제50조: 중점 정보기술 제품

1. 중점 정보기술 제품이란 다음의 요구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는 정보기술 제품이다.
 - a) 국내 시장의 수요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다.
 - b) 수출 잠재력이 있다.
 - c) 기술 혁신에 관한 적극적인 영향과 타 경제 분야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 d) 국방, 안보에 관한 요구에 부응한다.
2. 우정통신부는 정보기술 산업 개발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기별로 중점 정보기술 제품의 목록을 공포하고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3. 본 조 2항에 규정된 중점 정보기술 제품의 목록에 속한 정보기술 제품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생산에서 우선 투자된다.
4. 중점 정보기술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부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고, 국가로부터 우선 투자를 받으며, 국가가 투자한 중점 정보기술 제품의 저작권료 일부를 받는다.
5. 국가가 투자하는 중점 정보기술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관계 국가기관에 의해서 규정된 조건에 부응하여야 하고, 관계 국가기관의 동의가 없을 때는 국가가 투자한 중점 정보기술 제품의 기술 및 개발해법을 양도, 이전할 수 없으며, 중점 정보기술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촉진활동에서 관계 국가기관의 규정에 따른 보고제도를 준수하고, 검사, 감찰을 받는다.

제51조: 집중 정보기술 단지

1. 집중 정보기술 단지란 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훈련이 집중된 혹은 연결된 하이테크 공업단지이다. 집중 정보기술 단지에 투자하고 활동하는 조직 및 개인은 하이테크 공업단지에 적용하는 국가의 우대 정책을 향유한다.
2.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집중 정보기술 단지를 건설, 투자하는 국내외의 조직 및 개인을 장려한다.

제 4 편
정보기술 용역개발

제52조: 정보기술 용역의 유형

1. 정보기술에 관한 조사, 고찰, 시장 연구
2.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자문, 분석, 계획 입안, 분류, 설계
3. 시스템 조립, 시운전, 응용 관리 용역, 업데이트, 보안유지
4. 웹사이트 설계, 저장, 유지
5.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수, 유지, 안전 보장
6.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검색, 저장, 처리 및 개발

정보기술법 [베트남]

7. 정보기술 제품의 분배
8. 정보기술 훈련
9. 전자서명 인증
10. 기타 서비스

제53조: 정보기술 용역개발 정책

1. 국가는 정보기술 용역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2. 정부는 일부 정보기술 용역 유형에 대한 우대제도 및 조건을 구체적인 규정한다.

제 5 장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 보장방법

제 1 편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

제54조: 정보인프라 개발의 원칙

1. 정보인프라는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용역 유형의 품질과 다양화를 보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2. 관계 국가기관은 경제-사회 개발 요구에 맞는 정보인프라 개발을 보장할 책임이 있고, 경제구성원이 건전하고 평등하고 명백한 경쟁 환경에서 정보인프라를 사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본 법 규정에 반하는 정보인프라의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한 동보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

제55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의 보장

1. 국가는 역내의 각 국가와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 높은 품질과 속도, 대용량, 광범위한 국가 정보인프라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및 개인이 정보인프라에 함께 투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2. 공공 인터넷 접속장소는 조직 및 개인의 요구에 서비스하기 위하여 우체국, 면 문화우정센터, 역, 버스 터미널, 공항, 항구, 관문, 거주지, 병원, 학교, 슈퍼마켓,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한다.

제56조: 국가기관용 정보인프라

1. 중앙에서 지방까지 국가기관용 정보인프라는 통일적으로 건설하고 정부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 국가기관용 정보인프라의 투자, 건설, 개발, 유지 보수 경비는 국가 예산 및 기타 원천으로부터 취한다.

제57조: 공익용 정보인프라

1. 국가는 공익용 정보인프라를 건설하고 사용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지원 시스템과 투자자본 우선 배정 정책을 수립한다.
2. 각급의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a) 전국 범위 내에서 학교와 공공장소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한다.
 - b)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안내자를 양성한다.
 - c) 각 지역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

제58조: 국가 데이터베이스

1.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각 경제 분야의 정보의 접속 및 사용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 이익에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되고, 업데이트되고, 유지되는 하나 혹은 일부 경제-사회 분야의 정보의 집합이다.
2. 조직 및 개인은 법률로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접속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장한다.
4. 정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규정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데이트 및 유지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사용 규정을 공포한다.

제59조: 각 부,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1. 각 부,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란 해당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속 및 사용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 이익에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되고, 업데이트되고, 유지되는 정보의 집합이다.
2. 조직 및 개인은 법률로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접속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각 부,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장한다.
4. 각 부, 부급기관, 정부직속기관,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규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데이트 및 유지하며, 각 부, 분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사용 규정을 공포한다.

제60조: 정보인프라 보호

1. 국가 정보인프라는 보호되어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 인민무장부대 및 정보인프라를 관리, 개발하는 조직 및 개인은 협의하여 국가 정보인프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2. 조직 및 개인은 관리권에 속한 정보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인프라 안전 보장 및 각 관계 기관의 정보 안보에 관한 관리, 감사, 검사를 받으며, 요구를 이행한다.
3. 정보인프라를 관리, 개발하는 조직 및 개인은 각 관계 국가기관의 감찰 임무 및 정보의 안보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업무, 기술, 근무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 2 편
정보기술 투자

제61조: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투자

1. 국가는 경제-사회 관리의 혁신, 기술 혁신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기술의 응용활동을 위한 조직 및 개인의 투자를 장려한다.
2. 국가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외국의 조직 및 개인의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한다.
3.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비 및 기업의 다음의 각 비용은 기업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 a) 기업 내에 정보기술 학교, 학급을 개설
 - b) 기업의 정보기술 응용과 개발 수요에 서비스하기 위한 신기술 습득, 피교육자 파견

제62조: 정보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

1. 정보기술 투자란 개발투자이다.
2. 국가는 정보기술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매년 국가예산의 증가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정보기술에 대한 예산 비율 증가를 보장한다. 정보기술 예산은 효과적으로 관리, 사용되어야 한다.
3. 정부는 국가예산으로부터 투자 자본을 사용하는 정보기술 응용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투자관리 규정을 공포한다.
4. 국가예산 항목에 정보기술 지출항목을 별도로 둔다.

제63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대한 투자

1.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다음의 목적에 사용된다.
 - a) 정보기술의 응용 보급, 효과적인 정보기술 응용 프로젝트의 지원
 - b) 디지털 정보 개발

정보기술법 [베트남]

- c) 국가 및 각부,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d) 공익 및 국가기관용 정보인프라 건설
 - e) 정보기술, 제도, 정책, 전략, 기본계획, 기준, 기술표준, 경제-기술의 기준,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모형에 관한 조사, 연구, 건설, 시험, 진보된 과학-기술의 적용
 - f) 정보기술 인력 양성
 - g) 정보기술 관련법의 선전, 유포, 교육, 정보기술에 관한 관리, 전문 교육, 훈련
 - h) 정보기술 시상
 - i)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관한 기타 활동
2. 매년 우정통신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각부, 부급기관, 정부 직속기관 및 성 및 중앙직속시의 본 조 1항에 규정된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사업 예상 경비를 종합할 책임이 있다.

제64조: 농업 및 농촌용 정보기술의 투자 및 개발

1. 정보인프라 건설 투자를 위해 모든 원천을 유지하고, 농촌, 산악, 섬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2. 소수 종족이 있는 원격지,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주민의 생산과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응용하도록 편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3. 소수 종족이 있는 원격지,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투자, 재정 우대정책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우대를 향유한다.
4. 농업, 임업, 어업, 원양어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정보기술을 응용하고 제공하는 활동은 국가로부터 경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제 3 편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제65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원칙

외국 조직 및 개인 및 국제조직과 정보기술에 관한 협력을 하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은 독립 존중, 국가의 주권, 상호 내부 불간섭, 평등 및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른다.

제66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내용

1.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경향의 분석, 외국시장의 규모 및 개발 전망 및 외국에서의 정보기술 시장개발 전략 수립
2. 베트남과 세계 각국의 정보기술 응용 및 개발 방향,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파
3. 정보기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과 외국의 조직 및 개인, 국제조직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 정책의 수립
4.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이행
5. 외국에서의 정보기술 시장 개척, 국제 전시회를 통한 베트남 정보 기술 제품의 소개, 잠재적 고객에의 접근
6. 정보기술에 관한 세미나, 회의 및 포럼 개최
7. 정보기술에 관한 쌍무 및 다자간 국제조약의 체결, 가입, 이행과 국제조직 및 역내 조직에 참여
8. 외국 기술의 베트남으로의 이전 접수

제 4 편
정보기술 제품, 용역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 및 지원

제67조: 정보기술 제품, 용역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책임
국가와 사회는 정보기술 제품, 용역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 방지할 방법들을 이행한다. 정보기술 제품, 용역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68조: 베트남 국가 도메인(.vn) 보호

1. 베트남 국가 도메인(.vn)과 하부의 도메인은 국가 정보자산의 일부이며, 서로 같은 사용가치가 있고,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게 관리, 개발,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 국가 도메인(.vn)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등록 도메인은 다음, 다의성 혹은 베트남어에서 성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왜곡,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엄숙성을 이행한다.
2. 당과 국가기관을 위해 준비해둔 베트남 국가 도메인(.vn)은 보호되어야 하며 침해될 수 없다.
3. 베트남 국가 도메인(.vn)을 사용 등록한 조직 및 개인은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사용목적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져야하고, 베트남 국가 도메인(.vn)의 등록, 사용하는 일이 등록일 이전에 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장한다.
4. 우정통신부는 베트남 국가 도메인(.vn)의 등록, 관리, 사용 및 분쟁 해결에 대해 규정한다.

제69조: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 및 다음의 각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보전달의 기술적 요구로 인하여 보호되는 특정 작품을 임시로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시 복사본은 정보 전달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동안 저장된다.
2.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사용자는 예방적 저장 및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났을 때 저작권료 지불이나 허가 신청 없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권리가 보호된다.



제70조: 스팸메일 방지

1. 조직 및 개인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보낼 때 자신의 이름을 감추거나 타 조직 및 개인의 이름을 위조할 수 없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 광고 정보를 보내는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가 광고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3. 소비자가 광고 정보 수신을 동의하지 않음을 통보했다면 조직 및 개인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광고 정보를 계속해서 보낼 수 없다.

제71조: 컴퓨터 바이러스 및 유해 소프트웨어 방지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디지털 설비에 컴퓨터 바이러스, 유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설치하며, 확산시킬 수 없다.

1. 디지털 설비의 설치 매개변수(parameter)의 변경
2. 타인의 정보 수집
3. 디지털 설비에 설치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삭제, 작동을 못하게 함
4.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삭제 능력을 제한
5. 디지털 설비의 운영권한 점탈
6. 디지털 설비 상의 정상 정보의 변경, 삭제
7.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72조: 정보의 안전, 비밀 보장

1.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환, 전달, 저장되는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2.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각 행위 중 하나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 a) 네트워크 환경 상의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 내용에 침입, 수정, 삭제
 - b)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활동을 방해
 - c) 법률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에 접속을 방해

- d)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 및 비밀번호 잠금, 비밀번호의 크랙, 절도, 사용
- e)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환, 저장, 전달된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 비밀, 안전을 잃게 하는 행위

제73조: 어린이 보호책임

1. 국가, 사회 및 학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 a) 어린이가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정보의 소극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b) 폭력과 음란을 부추기는 내용의 정보기술 응용을 예방, 방지하는 각 방법을 진행한다.
2. 가정은 어린이에게 이익이 없는 정보에 어린이가 접속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3. 관계 국가기관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린이가 이익이 없는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을 진행한다.
 - a) 내용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하도록 보급한다.
 - b)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이익이 없는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보급한다.
 - c) 어린이에게 적합하고 유해하지 않은 정보 내용의 웹사이트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어린이 전용 웹사이트 개설을 안내하고 관리 하며, 어린이에게 적합하고 유해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상의 정보 내용 관리 능력을 증강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어린이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이익이 없는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5. 어린이에게 이익이 없는 정보기술 제품, 용역은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74조: 장애인 지원

1. 국가는 장애인이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근무 능력을 개발하고, 정보기술에 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우선 참여 정책을 수립한다.

2. 국가 정보기술의 개발 전략, 계획, 정책에는 장애인이 공동체와 화합하도록 함을 보장하고, 지원 내용을 담아야 한다.
3. 국가는 다음의 활동을 위해 세금, 대출, 기타 우대정책을 수립한다.
 - a) 컴퓨터 및 정보인프라 사용을 통한 정보 및 지식의 접촉과 사용하는 일 속에서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 및 응용의 연구-개발
 - b)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에 부응하는 디지털 정보의 내용 및 정보 기술의 응용, 기술, 설비, 용역의 생산 및 공급

제 5 장 분쟁해결 및 위법처리

제75조: 정보기술에 관한 분쟁해결

1. 정보기술에 관한 분쟁이란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활동에서 발생 되는 분쟁이다.
2. 화해를 통한 정보기술에 관한 분쟁해결 방법을 장려하고, 각 측이 화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76조: 베트남 국가 도메인(.vn) 등록, 사용에 관한 분쟁해결 형식
베트남 국가 도메인(.vn) 등록, 사용에 관한 분쟁은 다음 형식에 따라 해결한다.

1. 협의를 통한 화해
2. 중재
3. 법원에 제소

제77조: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1.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개인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 행정처벌 혹은 형사책임을 묻고, 손해를 끼쳤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조직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 활동정지를 당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78조: 시행 효력

본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을 갖는다.

제79조: 시행 안내

정부는 본 법의 시행령을 제정한다.

본 법은 2006년 6월 29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1대 국회 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응웬 푸 쯡